

##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(출국대기실경비원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 등록 일정 공고

2026년 제1회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(출국대기실경비원)  
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

### 1. 합격자 명단

#### 가. 최종합격자 명단

| 연번 | 채용분야     | 응시번호   | 성명 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|
| 1  | 출국대기실경비원 | 261028 | 주○철 |    |

#### 나. 예비합격자 명단

| 연번 | 채용분야     | 응시번호   | 성명 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|
| 1  | 출국대기실경비원 | 261014 | 임○강 |    |

### 2. 채용 등록 일정

가. 등록기간: 2026. 11. 2.(월) ~ 2026. 11. 4.(수)

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본인이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하며, 대리 등록 및 우편·택배 등록 불가

나. 장소: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민원실(김포공항국제선 2층)

#### 다. 제출서류

- ① 기본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) 1부(본인 기준)
- ② 주민등록부등본 1부
-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기준)
- ④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발행) 1부  
※ 해당사항 없어도 제출
- ⑤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  
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빙서류 제출 요함  
※ 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검진서로 대체 가능
- ⑥ 사진[반명합판(3×4cm)]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⑦ 통장 사본 1매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⑧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【별첨 1】
- ⑨ 공정채용 확인서 1부 【별첨 2】

### 3. 안내 및 참고사항

가.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다.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(계약 전 등록 포기 포함), 합격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의 채용 의사를 확인 후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 ※ 차기 해당 직종 채용 공고 시까지만 유효

라. 기타 사항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(☎ 02-2664-80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【별첨 1】**

##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시행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(출국대기실 경비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6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1조제1항(출입증발급제한 등)

1.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2. 항공보안법, 관세법, 출입국관리법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, 외국환거래법,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, 성범죄 관련법(보안요원에 한함),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5.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형사사건(재판)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처분이 미확정된 자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

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 귀하

## 공정채용 확인서

(응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

성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| 확 인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|
|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br>(        )촌 이내 / 소속기관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근무부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름 :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서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- 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 귀하

## 채용등록 포기서

- 시 험 구 분 :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
- 응 시 번 호 :
- 성 명 :
- 주 소 :  
(우편번호 )
- 전 화 번 호 :
- 휴대전화번호 :

위 본인은 ( )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(출국대기실경비원)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 2026년 월 일  
성명 : (서명/인)

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 귀하

※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: 타 시험 합격, 현 직장업무 계속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
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